

제4장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제4.1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아래의 정의는 다음을 말한다.

관세법이란 관세, 조세 또는 관세 당국이 징수하는 그 밖의 부과금 또는 관세 당국이 집행하는 금지, 제한 또는 통제 조치와 관련이 있는지에 관계없이 상품의 수입, 수출, 통과 또는 그 밖의 통관 절차에 관한 법률 및 규정에 의하여 이행되는 규정을 말한다.

통관 절차란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자국의 관세법 및 규정의 대상이 되는 상품 및 운송 수단에 적용하는 조치를 말한다.

인이란 맥락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자연인과 법인 모두를 말한다.

관세상호지원협정이란 2015년 12월 16일 발효된 것으로 합법적인 무역을 확보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 간 관세 협력 및 정보 교환을 보다 강화하는 협정을 말한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란 국가 관세 당국이 승인한 어떠한 기능이든지 상품의 국제적 이동에 연관된 업체를 세계관세기구 또는 이와 동등한 공급망 보안 표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상호인정협정이란 2018년 10월 1일 발효된 것으로 관세 당국 중 하나에 의하여 적절하게 부여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승인을 상호 인정하는 양 당사국 간 협정을 말한다.

제4.2조 적용범위

이 장은 양 당사국 각각의 국제적 의무와 그들의 국가법,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양 당사국 간 교역되는 상품의 통관에 요구되는 통관 절차에 적용된다.

제4.3조 일반 규정

1. 양 당사국은 양국의 관세법과 절차가 투명하고 비차별적이며 일관되고 무역에 불필요한 절차적 장애물을 피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2. 양 당사국의 통관 절차는 가능한 경우, 세계관세기구의 표준 및 권고되는 관행을 따른다.
3. 각 당사국의 관세 당국은 양국 간 무역을 원활히 하기 위한 통관 절차의 간소화와 발전을 위하여, 자국의 통관 절차를 주기적으로 검토한다.

제4.4조 정보의 공표 및 이용가능성

1. 각 당사국은 관세 사안을 규율하는 자국의 법, 규정, 지침, 절차 및 행정 판정이 가능한 한도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영어로 신속하게 공표되도록 보장한다.
2. 각 당사국은 관세 사안에 관련한 이해관계인의 문의를 다루는 하나 이상의 문의처를 지정, 수립 및 유지하며, 그러한 문의 절차에 관한 정보를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노력한다.
3. 이 조 또는 이 협정의 어떠한 부분에서의 규정도 당사국이 위험 분석 및 표적화 방법

론의 수행과 관련된 것을 포함한 법 집행 절차 및 내부 운영 지침을 공표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4. 각 당사국은,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그리고 자국의 국내법 및 법적 체계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통과 중인 상품을 포함하여 상품의 이동, 반출 및 통관에 관련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새로운 또는 개정된 법과 규정이 이해당사자가 그 새로운 또는 개정된 법과 규정을 인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발효 전에 가능한 한 조기에 공표되거나 그에 대한 정보가 널리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한다. 양 당사국은 그러한 정보와 공표물이 가능한 한도에서 영어로 이용 가능하도록 노력한다.

제4.5조

위험관리

양 당사국은 검사 활동을 고위험 상품에 집중하면서, 저위험 탁송물의 통관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상품의 확인된 위험에 기초하여 세관 활동에서 위험관리 접근법을 채택한다.

제4.6조

종이 없는 통신

1. 양 당사국은 국제 무역 자료의 양국 간 교환을 원활하게 하고 상품의 반출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국의 관세 당국과 무역 주체 간의 상거래를 지원하는 전자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2. 양 당사국은 각국의 관세 당국과 무역 주체 간의 종이 없는 통신의 실현과 증진에 대하여 의견 및 정보를 교환한다.

3. 양 당사국의 각 관세 당국은 종이 없는 통신의 사용을 규정하는 이니셔티브의 이행 시, 세계관세기구에서 합의된 방법론을 고려한다.

제4.7조 사전심사결정

1. 양 당사국의 관세 당국은 자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요청 시, 상품이 자국 영역으로 수입되기 전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요청에 기초하여, 요청 후 90일을 넘지 않는 합리적인 시간 제한 내에 인에게 다음과 관련하여 사전심사결정을 발급한다.

가. 품목분류

나. 상품의 원산지

다. 관세평가협정에 규정된 규정의 적용에 따른 평가기준의 적용, 그리고

라.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그러한 사안

2. 수입 당사국은 이 조의 제1항에 따라 자국이 발급한 사전심사결정을 그 사전심사결정이 발행된 날 또는 그 사전심사결정에 명시된 다른 날에 적용하고 그 사전심사결정이 수정되거나 철회되지 않는 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그리고 사전심사결정에 대한 국가절차에 따라 효력을 유지한다.

3. 그 당사국이 발급한 사전심사결정은 자국의 영역에서 그것이 발급된 그 인에게만 구속력을 가진다.

4. 당사국은 사전심사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실과 상황이 통관사후심사 또는 행정적, 사법적 재심사나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경우 사전심사결정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사전심사결정의 발급을 거부하는 당사국은 자국의 결정에 대한 관련 사실 및 상황과 근거를 적시하여 사전심사결정을 신청한 인에게 서면으로 신속하게 통보한다.

5.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사전심사결정을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 가. 사법적 결정 또는 자국 국내법의 변경을 준수할 것이 요구되는 경우
- 나.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정보가 제공되었거나 관련 정보가 보류된 경우
- 다. 사전심사결정이 잘못된 사실에 기초했던 경우
- 라. 사전심사결정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사실 또는 상황에 변경이 있는 경우, 또는
- 마. 이 장의 수정을 준수할 것이 요구되는 경우

6. 각 당사국은 신청인에게 발급된 사전심사결정을 철회 또는 수정하는 그 당사국의 결정을 설명하는 서면 통지를 신청인에게 제공한다.

7. 각 당사국은 사전심사결정의 수정 또는 철회가 발급된 일자 또는 그에 명시될 수 있는 더 늦은 일자에 변경 또는 철회의 효력이 발생하고, 사전심사결정을 발급받은 인이 그 조건에 따라 행동한 경우, 그 일자 전에 발생한 상품의 수입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한다.

8. 비밀유지 요건을 포함한 각 당사국의 절차와 법에 따라, 각 당사국은 자국의 사전심사결정을 인터넷을 통하여 공표한다.

제4.8조

벌칙

1. 각 당사국은 그 당사국의 관세법, 규정 또는 절차 요건의 위반에 대하여, 단독이거나 조합인지에 관계 없이 형사상, 민사상, 또는 행정상의 벌칙을 부과하는 조치를 유지한다.

2. 각 당사국은 관세법, 규정 또는 절차 요건의 위반에 대하여 발부된 벌칙이 자국의 법

에 따라 그 위반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만 부과되도록 보장한다.

3.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세행정기관이 부과하는 벌칙이 사건의 사실과 상황에 의존하고 위반의 정도와 심각성에 상응하도록 보장한다.

4. 각 당사국은 관세법, 규정 또는 절차 요건의 위반에 대하여 자국의 관세행정기관이 벌칙을 부과하는 경우, 벌칙이 부과되는 인(들)에게 위반의 성격과 벌칙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법, 규정 또는 절차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설명을 제공한다.

제4.9조 상품의 반출

1. 각 당사국은 무역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상품의 효율적인 반출을 위한 간소화된 통관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2. 제1항에 따라, 각 당사국은 다음의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가. 자국의 관세법과 규정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기간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 상품을 반출하도록 규정하는 절차

나. 도착 시 통관 통제로부터 상품의 반출을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상품의 도착 전에 적하목록을 포함한 서류와 자료의 전자적 제출 및 처리를 규정하는 절차

다. 창고 또는 그 밖의 시설로 일시적으로 이동시키도록 요구하지 않고 도착지점에서 상품이 반출되도록 허용하는 절차, 그리고

라. 당사국이 상품을 신속하게 반출하지 않는 경우, 실행 가능하고 자국의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상품이 반출되지 않는 이유와 어느 기관(관세 당국이 아닌 경우)이 상품의 반출을 보류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수입자에게 알리도록 요구하는 절차

3.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자국의 반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상품을 반출하도록 요구하지 않고 당사국이 자국의 법에 따라 보증금을 청산하는 것을 금지하지도 않는다.

4. 각 당사국은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그리고 자국의 관세법에 따라 수입이 의도된 상품이 그 당사국 영역으로의 입국 지점부터 상품이 반출되도록 의도된 자국 영역의 다른 세관까지 통관 통제 하에 자국의 영역 내에서 이동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적용 가능한 규제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5. 양 당사국은 요구될 수 있는 어떠한 검사를 조정하는 경우, 부패성 상품에 적절한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제4.10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양 당사국은 무역을 원활하게 하고 양국 간 준수 및 위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각국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프로그램의 상호인정협정의 이행을 계속하기로 합의한다.

제4.11조

국경기관 협력

각 당사국은 이 장에 따라 무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국경 통제와 상품의 수입, 수출 및 통과를 다루는 절차를 담당하는 당국과 기관이 서로 협력하고 그들의 활동을 조정하도록 보장한다.

제4.12조

특송화물

각 당사국은 적절한 통관 통제 및 선별을 유지하면서 최소한 항공 화물 시설을 통하여 들어오는 상품에 대하여 특송화물을 위한 신속한 통관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이러한 절차는

- 가. 특송화물이 도착하기 전에 그 화물의 반출에 필요한 정보가 전자적으로 제출되고 처리되도록 규정한다.
- 나. 가능하다면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적하목록과 같은 특송화물에 포함된 모든 상품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정보의 단일 제출을 허용한다.¹
- 다. 가능한 한도에서, 특정상품이 최소한의 서류로 통관되도록 규정한다.
- 라. 통상적인 상황하에서, 특송화물이 도착한 경우, 필요한 통관서류의 제출 및 모든 적용 가능한 절차와 요건의 충족 후 가능한 한 조속히 특송화물이 반출되도록 규정한다.
- 마. 당사국이 제품의 중량 또는 가치를 기초로 하여, 신고서 및 증명서류 그리고 관세의 납부를 포함한 공식적인 반입 절차를 반출의 조건으로 요구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모든 중량 또는 가치의 화물에 적용한다. 그리고
- 바. 통상적인 상황하에서, 그 당사국의 법에 따라 정한 일정한 금액 이하의 가치를 가진 특송화물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임을 규정한다.²

¹ 반출의 조건으로 추가적인 서류가 요구될 수 있다.

² 이 조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그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정한 제한되거나 통제되는 상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거나 공식적인 반입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제4.13조 통관사후심사

1. 상품의 반출을 신속화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세법 및 그 밖의 관련 법과 규정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통관사후심사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2. 각 당사국은 적절한 선별 기준을 포함할 수 있는 위험에 기초한 방식으로 통관사후심사를 위한 인이나 탁송물을 선별한다. 각 당사국은 투명한 방식으로 통관사후심사를 수행한다. 그 인이 심사 과정에 관여되고 확실한 결과가 달성된 경우, 그 당사국은 자신의 기록이 심사된 인에게 지체없이 다음을 통보한다.

가. 결과

나. 결과에 대한 이유, 그리고

다. 인의 권리 및 의무

3. 양 당사국은 통관사후심사에서 획득된 정보가 추가적인 행정적 또는 사법적 절차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4. 각 당사국은 실행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위험관리 적용 시 통관사후심사의 결과를 이용한다.

제4.14조 재심사 및 불복창구

1. 각 당사국은 자국이 관세 사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모든 인이 다음에 접근하도록 보장한다.

가. 재심사 중에 있는 결정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 또는 부서로부터 독립된, 관세

당국의 결정에 대한 최소한 한 단계의 행정적 재심사³, 그리고

나. 결정에 대한 사법적 재심사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불복청구 및 재심사 절차가 비차별적이고 시기적절한 방식으로 수행되도록 보장한다

3. 각 당사국은 제1항에 따른 재심사 또는 불복청구를 수행하는 당국이 그 재심사 또는 불복청구의 판정 또는 결정과 그 판정 또는 결정에 대한 이유를 그 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보장한다.

제4.15조

관세 협력

1. 양 당사국은 합법적인 무역을 확보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양국 관세 당국 간의 관세 협력 및 정보 교환을 더욱 강화하고자 양국 간 서명된 관세상호지원협정의 이행을 계속하고 이 장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2. 이 장에 따른 지원은 요청을 받은 당사국의 국내법 및 양 당사국 간 서명된 관세상호지원협정의 규정에 따라 제공된다.

3. 양 당사국은 이 장의 효과적인 이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공식적인 접촉선을 교환한다.

제4.16조

비밀유지

1.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공개되면 법 집행을 저해하게 되거나 달리 공익에 반하게

³ 아랍에미리트의 경우, 한 단계의 행정적 재심사는 관세행정을 감독하는 권한 있는 당국을 포함할 수 있다.

되거나 특정한 공기업 또는 민간기업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을 저해하게 될 비밀 정보를 당사국이 제공하거나 그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이 협정에 따라 제공받은 모든 정보는 비밀로 취급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이 장에 따라 획득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하고 그 정보를 제공한 인의 경쟁적 지위를 저해할 수 있는 공개로부터 그 정보를 보호한다.

제4.17조

원산지 및 통관 절차 위원회

1. 양 당사국은 공동위원회 산하에 양 당사국의 관세 당국 및 권한 있는 당국으로 구성되는 원산지 규정 및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위원회를 설치한다. 양 당사국의 그 밖의 권한 있는 당국은 양 당사국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이 장 및 제3장(원산지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사안을 특히 그러한 장들의 해석 및 이행에 대한 공통적인 접근 방식을 고려하여 검토하고 적절히 해결한다.

3. 위원회는 어느 한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회합한다.